

2023년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일시: 2023년 12월 1일(금)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ZOOM 진행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목 차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 오후 2시~4시

장소 온라인 줌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회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 표 ‘성폭력 사건-문제적 공탁사례’ 결과 분석 **1쪽**

호랑(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토론1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지위/의사에 대한 고려 **13쪽**

장임다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2 성폭력 사건 공탁사례 결과 **18쪽**

백영남(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토론3 피해지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개선방안 **22쪽**

정명화(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성폭력 사건-문제적 공탁사례’ 결과 분석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호랑

1. 들어가며: 형사공탁특례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본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 “피해 회복을 위해 ○○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와 같은 문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한 내담자(피해자)는 판결문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하고 ‘공탁이 무엇이나’고 여러번 질문을 던졌다. 이미 재판 진행 과정에서 형사공탁을 알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었지만 판결문을 받고 난 뒤 피해자의 질문은 다시 되풀이 되었다. 이는 실제로 제도의 방식이나 정의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 안돼요, 제가 합의를 원치 않고 제대로 처벌받게 해달라고 탄원서도 냈는데요?”와 같은 내담자의 질문은 자신이 원치않는 공탁을 재판부가 ‘피해회복을 위한’ 가해자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가해자의 유죄가 입증되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탁’은 법적 과정에서의 자신의 의사가 무시된 하나의 경험으로 남게 된다.

공탁(供託)이란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任置)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해자 쪽이 적절한 금액을 법원에 맡겨 합의에 최선을 다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가해자는 피해자(피공탁자)의 동의 없이는 무죄 판결, 혹은 불기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탁은 성폭력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형량 판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성범죄양형기준에는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이 양형에 유리한 사유, 즉 감경 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공탁은 기존에도 ‘형사변제공탁제도’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다. 이전에 공탁 시 피해자(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했다. 최근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없이도 공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례제도의 도입 취지를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뀐 특례제도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이나 사건번호만으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으며, 즉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공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미 2022년 6월 양형위원회의 범죄양형기준수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공탁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보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본 상담소는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은 일방적인 공탁까지 곧 상당한 피해회복이라고 간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해당 양형기준을 삭제하거나, 설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제외”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공탁이 곧 ‘피해회복’으로 간주되는 조건 속에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공탁이 확대되는 것은 현장의 우려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다.

도입부에 적었던 것처럼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피해회복을 위해 ○○○을 공탁했다”와 같은 판결문의 표현은 피해자들에게는 오히려 법도덕과 정의에 대해 질문하게 하는 문구가 되어버린 것이다. 공탁은 성폭력피해자의 ‘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 형사공탁은 정말로 피해회복을 위한 것인가?

2. 사례수집 결과 분석: 형사공탁 감경의 실태

[표1] 응답자 특성

항목	사례수	비율
피해지원기관	50	75.8%
피해자 변호사	9	13.6%
기타 (피고인 변호사, 별도수집 등)	7	10.6%
총계	66	100.0%

[표1] 성폭력 유형

범죄유형	강간 *	강제추행 **	아동청소년관련 ***	카메라, 촬영물 이용	스토킹	총계
사례수	21	20	12	8	5	66
비율	31.8%	30.3%	18.2%	12.1%	7.6%	100.0%

* 준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유사강간 등 포함

** 준강제추행 등 포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성폭력 관련 범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와 함께 피해지원 현장에서의 성폭력 재판에서의 공탁사례를 수집했다. 사례수집은 10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었다. 전성협 소속 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피해지원기관 및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가 응답하였고 일부 사례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별도로 판결문을 수집하여 파악했다(참고: [표1] 응답자 특성). 수집된 총 66개의 사례의 범죄유형은 강간과 강제추행이 각각 21건, 2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및 카메라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 등의 디지털 성폭력과 스톱킹 사례도 포함된다. (참고: [표2] 성폭력 유형)

1) 공탁으로 인한 감경사례 절반 이상

[표3] 공탁이 판결에 끼친 영향

항목	사례수	비율	세부항목	사례	비율
감경사유 반영 및 반영추정	38	57.6%	판결문 '공탁' 명시	34	51.5%
			판결문 '피해 회복' 등 명시	4	6.1%
반영안함	16	24.2%			
알수없음	9	13.6%			
기타	3	4.5%			
총계	66	100.0%			

먼저, **절반 이상의 사례(57.6%)에서 형사공탁이 감경사유로 명백하게 등장하거나 감경 사유로**

3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추정되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만원을 공탁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혹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만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탁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등의 문구가 양형과 관련하여 적혀있는 경우 공탁으로 인한 감경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살펴보면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과 같이 피해의 규모가 크거나 매우 문제인 감경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73명의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수천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언급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미약하게나마 노력”했다고 명시했다(○○지방법원 2022고합000). 해당 사례는 피해지원기관과 시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는 제목의 기사로 언론에 보도 되었다. 피공탁자인 피해자 69명 중 66명은 수령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물론 공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4건중 1건 가량으로 상당수 존재한다. 모든 재판부가 형사공탁을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 공탁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반영하지 않는 판결문은 “당심에서 ○○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양형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항소를 기각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합의나 합의금 수령등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을 결정적 양형인자로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명시한 판결문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반영 여부가 오롯이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달려있다는 점이다. 온전히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된다면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좋은 재판부’를 만나는 것을 고대해야만 하는 셈이다. 그렇지만 반영(혹은 반영 추정)된 사례(57.6%)가 반영되지 않은 사례(24.2%)보다 2배 이상 많은 조건에서 ‘좋은 재판부’를 만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일부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탄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공탁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반영하기도 했다. 예컨대 한 판결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만원을 공탁한 점 ... 등

* 강원도민일보(2023),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2023년 4월 25일자

**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 (출처: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 한편 기존연구에 따르면 공탁 감경에 대한 법관들의 의견은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데, 이는 개인적 법익이므로 그 주체인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손해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이진화(2015), “합의와 공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 『사법』, 1(31), 33-73쪽)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언급했다 (○○지방법원 2023노0000). 이러한 판결문은 피해자의 의사를 명시하였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감경한 판결보다는 의미 있다. 하지만 질적으로 공탁이 형량과 판결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보장되지 않는 공탁제도

[표4] 공탁시점

단위: 사례수(%)

	공판진행중	공판 후 선고 전 (기습공탁)	기타 (미확인 등)	계
감경 반영 (판결문 '공탁' 명시)	20 (30.3)	8 (12.1)	6 (9.1)	34 (51.5)
감경 반영 추정 (판결문 '피해회복' 등 명시)	1 (1.5)	3 (4.5)	-	4 (6.1)
반영안함	9 (13.6)	6 (9.1)	1 (1.5)	16 (24.2)
알수없음	8 (12.1)	1 (1.5)	-	9 (13.6)
기타(미확인 등)	2 (3.0)	1 (1.5)	-	3 (4.5)
계	40 (60.6)	19 (28.8)	7 (10.6)	66 (100.0)

현행 형사공탁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피해자의 의사를 표명이 매우 험난하다는 점이다.

①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 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기습공탁'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수집된 사례 중 기습공탁이 19건으로 전체의 28.8%로 나타난다.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가 2배 가량 많지만, 기습공탁의 비중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다*.

문제는 법원공탁소에 공탁금이 맡겨지고 피해자(피공탁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판이 종료된 후 공탁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이다. '기습공탁'으로 인해 피해자가 충분히 숙고하거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래는 기습공탁과 관련한 주관식 답

* 한편 KBS는 성폭력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에서 지난11월 공탁이 이루어진 판결 중 절반 이상이 선고 2주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기사는 기습공탁의 71.8%가 감경사유로 적용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KBS(2023), “절반 이상이 ‘기습 공탁’...‘감경 사유로 판단’“, 2023년 11월 13일자)

5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판결 일주일 전에 가해자 측에서 형사공탁, 다음날 전자공탁공고, 사건검색에는 공탁일로부터 5일 후 올라왔고, 공탁통지서는 선고일에 도달함. 즉, 피해자가 공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매번 검색해볼 수도 없고, 사건검색이나 통지서가 5일 후에 온다면 피해자측에서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시간은 전무할 수도 있음.
- 범행 전부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앞두고 마지막에 자백하고 선고 한달 전 기습공탁을 함. 한달 동안 탄원서, 의견서 등을 황급히 제출하였지만 공탁 사실이 감경사유로 인정됨.
- 선고 하루 전 기습공탁이 진행되어 피해자는 공탁사실조차 알 수 없었고 선고 후에 공탁으로 감형된 사실을 알고 분노하였으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망연자실함.

② 또 다른 문제는 해당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면 해당 사실은 '전자공탁' 홈페이지와 대법원 홈페이지 '형사공탁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 통지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에 이를 고지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공탁사실을 '알 수도' 있다. 즉, 공탁관이 법원/검찰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법원이 나의사건검색에 등록하면 이후에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공탁 사실이 피해자측에 전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현행제도로는 전자공탁홈페이지를 날마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 공탁 사실을 피해자가 인지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따라서 공판 중에 공탁이 이루어졌음에도 피해자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며, 공탁 이후 1개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답변도 존재했다.

③ 또한 미성년자나 가명을 사용하는 피해자의 경우 법원에 공탁 수령거부 의사를 밝히는 과정도 쉽지 않다.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탁수령거부를 하는 과정이 극히 복잡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절차를 대리해야 하고 공탁소마다 그 절차안내가 다름.
- 기습공탁으로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는데 가명 사용자라서 동일인 인정 가능한 서류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음. 동일인 인정에 관한 서류발급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었고, 재판 진행중에 서류를 제출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불시 제출함(피해자는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국선이 검사를 통해 재판 직전에 파악함). 경제적 지원 끊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공탁자(가해자)는 공탁 시 무죄확정판결이 있거나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를 하게 되며, 무죄확정판결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피해자)의 '공탁금 회수동의서'가 요구된다.

3) “상당한 피해회복”을 가로막는 형사공탁

[표5] 피해자 의사*공탁이 판결에 끼친 영향 (확인불가 2건 제외) 단위: 사례수(%)

	피고인 엄벌탄원, 공탁거부 등	법원에 의견 제출기회 없었음	알수없음	공탁 수령희망	계
감경 반영 (판결문 '공탁' 명시)	17 (26.6)	6 (9.4)	10 (15.6)	-	33 (51.6)
감경 반영 추정 (판결문 '피해회복' 등 명시)	3 (4.7)	1 (1.6)	-	-	4 (6.3)
반영안함	13 (20.3)	1 (1.6)	1 (1.6)	-	15 (23.4)
알수없음	7 (10.9)	1 (1.6)	-	1 (1.6)	9 (14.1)
기타(미확인 등)	3 (4.7)	-	-	-	3 (4.7)
계	43 (67.2)	9 (14.1)	11 (17.2)	1 (1.6)	64 (100.0)

한편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공탁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사례 중 67.2%(43건)의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나 회수동의서 작성하여 공탁수령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우선시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한 “법원에 의견 제출기회 없었음”에 체크한 사례 중 5건에서도 의사를 재판부에 밝히지 못했을 뿐 피해자가 공탁을 원치 않았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해당 사례를 포함하면 75%(48건) 이상이 공탁 수령을 원치 않았거나 공탁보다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했던 것이다.

‘알수없음’ 항목은 피해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지만, 해당 사례의 주관식 답변에서도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가 “합의 의사 없었는데 공탁 이후 심리적 스트레스 받았다”고 적혀있다. 실제로 공탁수령을 적극적으로 희망했던 피해자는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의 의사가 의견이 모두 재판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탁을 원치 않는 피해자 중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된 판결은 전체 사례의 20.3%(13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탄원서 등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할지라도 공탁이 감경사유로 반영되었거나, 반영되었다고 추정되는 사례가 31.3%(20건)로 더욱 많다. 과연 형사공탁을 원치

않았음에도 감경된 20건의 사례의 피해자들에게 공탁이 '피해회복'으로서 작동했을까?

아래 [표6]은 형사공탁 사례에서 나타났던 특수한 상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사례에서의 특수한 상황을 살펴볼 경우, 형사공탁이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유리한 협상의 카드로 사용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6] 사건의 특수한 상황 (중복포함)

항목	사례수	전체 대비 비율*
가해자 합의 시도	22	33.3%
가해자 범행 부인	12	18.2%
피해자 다수	12	18.2%
가해자 다수	5	7.6%
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	3	4.5%
피해자 소재불명	2	3.0%

*전체 사례수(66건) 중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의 비율

①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한 사례는 총 66건 중 22건(33.3%)으로 수집된 사례 중에 가장 높은 특수한 상황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압박하여 합의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공탁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아래는 합의와 관련한 주관식 답변 중 일부이다.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합의요청으로 논의 중 기습공탁하여 피해자는 뒷통수를 맞은 느낌으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음
-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공탁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 난 후,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하였고 통하지 않자 검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함.
- 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을 원했으나 피고측에서는 어차피 합의 안되면 공탁걸어서 감형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압박함
- 선고기일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포기함. 의견 제출 할 시기를 놓침.
- 애초에 합의금으로 제시했던 돈의 절반만 공탁해도 감형되는 현실에서 가해자들의 감형 수단으로 전략한 상황에서 기습공탁은 말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②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한 사례도 전체의 18.2% (12건)에 해당한다. 이는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공탁을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고 '기습공탁'을 하

는 경우이다. 아래는 가해자의 범행 부인과 관련한 주관식 답변 중 일부이다.

- 범행 전부 부인하다가 변론종결 앞두고 마지막에 자백하고 신고 한달 전 기습공탁을 함. 한달 동안 탄원서, 의견서 등을 황급히 제출하였지만 공탁 사실이 감경사유로 인정됨.
- 변론종결까지 범행부인하고, 최종 변론요지서에서도 범행부인하던 인간이 기습공탁. 판결에는 반영 안되었지만(무죄) 공탁이 일종의 보험으로 활용되는 전략.

위의 ①, ②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탁 사실을 알게되는 것이 오히려 '뒷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공탁을 일종의 협상카드, 보험으로 사용한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사공탁은 '피해회복'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기습공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당혹감과 불쾌감은 증폭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신원미상이거나, 소재지 불명인 경우도 2건에 해당했다. 이는 경우 가해자의 공탁의사 및 공탁금이 전달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이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공탁에 대한 의사를 밝힐 수 없으며, 어쩌면 피해자가 영원히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회복'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표5]에서 밝혔듯이 대다수의 피해자가 공탁수령보다는 가해자 엄벌을 원하는 현실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를 '피해회복'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④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한 사례도 3건이 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무죄확정판결 없이 공탁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에 피해자가 동의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일부 피해자들은 공탁수령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한다. 또한 이중 1건은 회수동의서를 작성했음에도 감경된 것이 확인되었다. 실질적으로 공탁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에도 감경사유로 인정한 것이다.

3. 형사공탁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배상받을 권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려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어 더이상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도포기해 등록금을 날리

* [표6]에 제시된 피해자 소재불명의 사례는 2건이다. 피해지원기관이나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수집된 사례에서는 해당 사례의 건수는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착취물 제작이나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디지털성폭력 등의 지원 사례에서 한명의 피해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신원미상의 피해자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따라서 실제 피해자 신원미상 혹은 소재지불명의 사례의 비율은 더 높을 수 있다.

는 등 금전적 '손해'를 경험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치료와 병원진료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겪은 성폭력 피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배상적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 것은 필요하고,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형사소송절차 중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제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형사공탁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이기보다는 가해자를 감경/감형을 위한 남용되고 있다. 사례 분석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의 공탁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공탁수령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한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사례에서 공탁이 감경에 유리한 양형인자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가해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재빠르게 반영하여 합의를 위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거나 피해자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도록 기습적으로 공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공탁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당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이기보다는 시장화되는 사법제도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구매하는' 활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형사공탁특례제도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만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2차 피해 방지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사법절차를 통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1) 형사공탁 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두고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판 종료 후 이루어지는 '기습공탁'의 경우 변론재개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1월 기준 '기습공탁'을 막기 위해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첫 번째 개정안은 공탁관이 공탁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고, 법원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이다***. 두 번째 개정안은 변론종결 기일 14일 전까지만 공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대해서는 포괄하고 있지

* 김보화(2023), 『시장으로 간 성폭력 :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휴머니스트
** 변외로 형사공탁특례제도의 시행의 또 다른 수혜자는 은행과 정부일 수 있다. 작년말 기준 법원 공탁금 잔고는 약 11조114억이다. 공탁금은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일반 예금보다 낮은 연 0.1~0.35%의 이자를 주며 거금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청구 시효인 10년을 넘길 경우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올해 기준 국가에 귀속된 공탁금은 981억에 달한다. (출처: 문화일보(2023), "최근 5년간 법원 공탁금 잔고 11조, 올해 국고 귀속 공탁금은 981억 규모", 2023년 10월 24일자; 조선일보(2023), "신한은행, 청주·천안법원 공탁금 보관 은행 선정", 2023년 10월 27일자)
*** 개정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24918, 황운하 대표발의)
**** 개정안: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해당"으로 한다. (의안번호 24951, 설훈 대표발의)

않다.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단순히 기습공탁을 막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현재의 개정안에서 나아가 피공탁자(피해자)의 의사를 절차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공탁법 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습공탁 시 변론재개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행될 수 있게 법원의 실무 규정이나 지침, 매뉴얼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 2)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의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을 수정하고, 양형인자로 반영 시 ‘피해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미 아래와 같이 2022년 6월 성범죄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재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변경안은 일방적인 상당 금액 공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공탁까지 곧 상당한 피해회복이라고 간주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름없음. 게다가 공탁 액수의 정도 기준도 해제해주고 있음. 피해자의 직접적인 용서,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동반하는 합의, 처벌불원이 아닌 공탁 관련한 조항이 위와 같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제출함.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자의 동의없는 공탁 제외” 조항이 삽입되어야 하며, 그럼에도 수정될 수 없다면 균형을 갖추어 가중요소와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에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정도”를 신설해야 마땅함. (2022년 6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범죄양형기준의견서)

위의 의견서에 작성되었듯이 공탁은 처벌불원 · 합의와 같이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가 동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공탁을 ‘피해회복’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를 법적과정에서 배재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해당 양형기준을 삭제하거나, ‘피해자 동의없는 공탁’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탁 수령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가해자가 범행을 시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인하다가 공탁을 하거나, 가해자측이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탁을 빌미로 삼았거나, 2차 피해 등을 일삼았을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정상참작 사유로 보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현재 계류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성폭력 범죄 전반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할

*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로 보지 아니 한다. (의안번호 23791, 양기대 대표발의) (의안번호 23791, 양기대 대표발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3) 피해자가 신원미상이거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당한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유리한 양형인자로 감경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사실상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인지하고 수령/거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때, 공탁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도 회복을 위한 절차도 될 수 없다. 제3자에 의해 고소되거나 경찰인지수사로 진행된 경우, 혹은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만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등의 사건에서는 신원미상 혹은 소재지 불상에 대한 형사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묻는 것과 더불어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감경사유로 반영하지 않도록 공탁 규칙 개정 및 관련 매뉴얼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모든 피해자가 형사공탁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이행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가명 피해자가 다수이며, 공탁 회수동의서 작성 등 수령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 다행히 법원행정처에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피공탁자(피해자)의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도 보호될 수 있도록 공탁 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일부의 불편함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에 대한 혼란이 존재한다.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이 피해자와 다른 수령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실질적 제도 실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도를 이해하고 원활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이행과정에서 안내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지위/의사에 대한 고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형사공탁실무의 배경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 이행으로서 피해회복의 인식

- 가해자에게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책임이 있음
- 원상회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금전적인 손해배상에 한하여 이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양형상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는 형사실무의 영향

-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을 때에 양형기준상 감경적 형량범위가 결정되는 등 핵심적인 양형인자
-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의 개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로 인식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지 못한 가해자에 대한 참작사유

-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게 하는 변제공탁을 활용하여 피해변상채무 공탁
-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가 과다하거나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 형사합의금 내지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하는 공탁으로, 회수제한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 양형 참작
- 피해자의 수령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참회를 요구(부산지법 2008고단591판결)

형사공탁에 대한 비판들

공탁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2차 피해 문제

- 공탁법상 공탁시 피공탁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기록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
-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문제되어, 성폭력 범죄자 형사공탁을 위해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제안되기도 함
- 이후 성폭력범죄 2차 피해 대응이 강화되면서 기록의 열람등사시 피해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검찰 및 법원 실무가 확립
- 그러나 여전히 협박 등 다른 범죄에서 공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는 형사공탁의 남용 문제

- 성폭력범죄 형사공탁이 활발했던 당시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공탁을 통해 적은 돈과 노력으로 감형받으려는 태도가 문제됨

피해자와 관련 없는 피해회복의 노력에 대한 평가

- 피해자의 수렁 의사에 대한 고려 없이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양형태도에 대한 비판

형사공탁특례의 의미와 취지

피고인의 피해회복에 대한 기회부여 및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양립 보장을 위해 도입

- 양형기준제 하에서 형사공탁은 일반감경인자 중 '상당한 피해회복'으로 인정
- 형사공탁을 일종의 피고인의 방어권으로 보는 관점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 기재 없이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탁법 개정 추진

형사공탁특례제도 논의 중 공탁통지를 위한 피해자 정보 요청시 피해자 동의 요건에 대한 법무부 및 법원 의견

- (법무부) 피해자 동의를 얻는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규정이 필요
- (법원행정처) 피해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라면 정보제공에 동의하겠으나 이는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하므로 공탁 필요성이 없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공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자 동의를 얻어 정보를 제공하는 안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러한 의견이 반영, 공탁관이 피공탁자인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갈음하는 것으로 확정

형사공탁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판단하기 위한 감형제도이며, 여기에서 피해자 내지 피해회복의 실질은 고려대상이 아님

“양형에서 고려하고 있는 피해회복의 의미란 무엇인가?”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양형기준과 판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근대적 형사법에서의 피해자 부재에 대한 비판

범죄는 사회규범 및 질서에 대한 위반 행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법질서 위반에 대한 응보로 부과

처벌의 정도는 행위책임과 비례하지만 책임을 가중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행위 및 행위자요소 등 형벌의 예방적 목적에 따라 변화

피해를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정의실현과 사회통제의 관점으로 구성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경험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행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경험을 판단대상에서 배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해결에 대한 고민 부재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를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고려한 형사절차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 진행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회복 및 배상을 다룰 수 있는 절차적 개선 추진

범죄자와 피해자에게 평행적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형사법개혁 필요(Herman, 2004)

양형기준과 판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양형기준제에서 피해회복과 관련된 요소

양형참작사유인 **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제4호)**으로서 피해회복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

처벌불원의 의미

2021년까지는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처벌불원이 피해회복과 관련성을 가짐을 분명히 하였으나, 2022년 양형기준부터 피해보상에 대한 문구가 삭제

2023년 양형기준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로 제시되어, 피해자의 의사를 의미하는 방향으로 바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의 의미

2022년까지는 ‘상당 금액 공탁’으로 표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설명 (2023년 양형기준제에서는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용어 변경되었으나 설명 삭제)

양형기준과 판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성범죄에서의 일반감경인자인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

양형기준제에서 성범죄 이외에 살인 및 절도 등 신체 또는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제시
다른 범죄에서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포함)’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제시
그러나 성범죄에서는 상당한 피해회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로만 제한

피해회복을 고려하지 않은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이라는 감경요소

피해회복의 객관적 기준 없이 상당한 피해회복이라는 표현만이 해당 양형요소의 판단기준을 제시 (결국 공탁액수의 문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금액을 공탁했는지 여부는 피해자를 통해 확인해야 하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순간 형사공탁의 취지와 배치
‘피해회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인자이나 여기에서 피해자 내지 피해회복의 정도에 대한 고려는 사실상 부재

양형기준과 판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양형요소로서 피해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피해회복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행위자적 요소 및 결과적 요소로서 고려

피해회복 내지 피해감소를 위한 노력이나 범죄 원인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생활관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예방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회복이 달성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피해회복이 실패하더라도 범죄행위자의 노력을 감경사유로 고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제도화된 절차가 부재

현재 상당한 피해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는 공탁금 액수와 이를 회수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의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구체적 과정에 대한 평가는 부재한 상황

피해자의 의사는 단지 공탁수령 거부행위 또는 엄벌탄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 (이는 해당 요소를 평가하는 데에 배제되는 사항)

상당 금액을 공탁했다라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노력 등이 없으면 공탁을 감경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있으나 피고인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음

양형기준과 판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고려

양형요소 판단에서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기

피해자와 관련된 요소를 대등한 양형요소로 구성

처벌불원이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고 있으나 처벌불원은 피해회복의 결과적 지표일 뿐 실질은 피해회복

피해회복을 통해 행위결과와 불법성이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피해자 관련 양형기준으로 변화시켜야 함 (처벌불원이 아니라 피해회복)

피해회복의 결과(합의 포함)가 감경요소라면, 피해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심각한 피해결과와 지속은 가중요소가 되어야 함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요소를 행위자 요소 및 행위결과요소로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의 판단시 피고인의 진정성 확인 기준을 제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 행위자적 또는 행위결과적 요소에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범행 후 태도를 공탁사실과 함께 평가해야

피고인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공탁의 결과만을 고려하는 실무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해자의 엄벌의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경제력 자체가 피해회복의 노력 정도로 평가되는 결과를 초래

형사공탁시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소명하도록 증거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피해자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성폭력 사건 공탁사례 결과*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백영남

사례 1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피해자 2명에 대해 형사 1심, 형사 2심, 민사소송 및 가압류 지원을 하였으며,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어 진행됨.

가해자는 예술단체 사무국장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지역 가수로서 명성이 높고 지역 유지들과의 인맥이 좋았으며 자신의 우월적 권력을 이용하여 이제 갓 입사한 피해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상습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을 함.

피해자1은 2021년 1달 가량 근무하면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피해는 회사(학원)에 출근한 다음날부터 시작됨.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행에 싫은 티를 내면 가해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더 화를 내며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렸고, 피해자가 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며 성추행을 이어감. 이에 피해자는 고민을 많이 했고, 고민 끝에 일자리를 소개해 준 관련 기관에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였으며 1366을 통해 같은 해 본 상담소로 연계됨.

피해자2는 2020년 6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음. 피해자는 사회초년생으로 출근한 지 십여 일이 지난 후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처음에 그루밍으로 접근하였고 성추행의 수위를 높여가며 날이 갈수록 범행이 더 대담해짐. 가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무방비 상태였고 피해자가 성추행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가해자는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불같이 화를 냄. 피해자는 이런 가해자의 성추행과 업무적인 질타에 무섭고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였고 누군가의 댓글을 본 후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함. 이후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기를 내어 고소를 결심함. 피해자1과 연결이 되면서 상담소로 연계되었고, 이 두 사건이 병합되어서 재판이 진행됨.

* 본 토론문은 사례에 등장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발표합니다.

■ 형사소송 지원

1. 1심에서는 가해자는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된 진술로 일관함. 피해자1에게는 피해자다움(피해를 당했는데 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냐, 차에서 스킨십을 했으면 다음에는 뒷좌석에 탔어야 했는데 왜 앞좌석에 탔냐, 피해 당일에 엄마랑 통화하면서 왜 웃었냐, 피해를 당했으면 웃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을 요구함. 피해자2에게는 피해 당시 고소를 왜 바로 하지 않았는지, 다른 피해자와 서로 모의를 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을 함.
 - 가해자는 1심에서 부인하다가 처음에 0000만원을 공탁하였고,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0000만원을 공탁함.
 -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고인은 법정 구속됨
 - 양형의 이유
 -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0000만원 씩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2심

- 죄를 인정하였고, 추가 공탁을 0000만원을 함.
- 양형 이유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범행한 바,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0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 3심 : 상고 기각

■ 민사 소송 지원

- 피해자2의 경우,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0만원을 지급하되, 형사공탁한 각 공탁금 합계 0000만원을 원고가 출금하여 충당.
- 피해자 1의 경우, 조정 성립되고 내용은 위와 동일함.

■ 지원 시 애로사항

- 형사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2가 지인의 권유로 인해 마음이 흔들려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를 보임.(지인이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해줌) 여기에 공탁금 0000만원이라는 액수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짐. 반면 피해자1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상황이었으며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음.
- 이에 상담소에서 피해자2를 상담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상기시키고 가해자처벌에 초점을 맞추자고 설득함.
- 피해자 변호사가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실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음을 이야기해줌.
- 이에 피해자2가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기로 함.

사례 2

피해자는 초등학생, 2020년 사건으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연계됨. 피해자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가해자가 다가와 말을 걸어옴.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와 강제로 추행하고 이웃에게 들켜 추행을 멈춘 사건임.

가해자는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출소한 지 12년이 지나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름.

1. 1심

- 가해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고, 1심에서 000만원을 공탁하였음.
- 피해자의 보호자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함.
- 판결: 징역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
-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2) 유리한 정상: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000만원을 공탁한 점.

2. 2심

-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는 합의함.
- 판결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5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

- 양형의 이유

- 1) 불리한 정상: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의 정도가 아주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과 대인기피증을 호소한 점, 가해자가 과거 강도강간으로 선고받고 복역한 점
- 2)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한 점, 000만원 형사공탁한 점, 범행인정한 점, 동종범행으로 출소한 지 12년이 지난 점이 정상참작 됨.

■ 의견

1. 사례1, 1심과 2심 판결문 양형이유를 살펴보면 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릴 만큼의 정상 참작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확실한 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2명, 사건의 횡수가 많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으로 가해자가 법정 구속됨.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을 원할 경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임.
2. 사례2,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한 1심 재판에서는 공탁이 형량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심 재판에서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한 점이 감경요소로 작용돼 형이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됨. 이 경우 형사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 것을 볼 수 있음.
3. 사례1,2를 살펴보았을 때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분명하고 공탁을 거부하고 수령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이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지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개선방안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정명화

1.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공탁 대응 과정 개괄

가. 형사공탁과 일반공탁의 차이

-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의미한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아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를 통한 공탁이 가능하므로, 이와 구분된다**.

나.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하는 방식

1)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 실무에서는 피고인(가해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포함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 피고인(가해자)가 형사공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절하면 피고인(가해자)은 해당 서면을 공탁원인서면으로 활용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공탁법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공탁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을 지정된 은행이나 참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20조(공탁서) ① 공탁을 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공탁원인서면)

- 다만 성폭력 관련 법령의 경우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때는 위와 같은 절차 없이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다.*** 이때는 공탁원인사실란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적용 법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명칭을 기재한다****.

2) 형사 공탁 사실의 통지

가) 형사공탁공고(전자공고)

- 형사공탁이 성립되면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와 대법원홈페이지에 “형사공탁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공고 화면을 조회하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ckt/ckt01.jsp>)

규칙 제83조제3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면을 말한다.

1.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2. 그 밖의 규칙 제83조제3호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23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형사공탁 공고

안내문(안)

- ▣ 이 공고란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형사공탁 사건에 대하여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에 갈음하여 공탁사건의 경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 ▣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성을 제외한 이름은 비실명 처리하거나 피공탁자의 성명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형사공탁 사건 중 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사건번호(법원사건번호, 검찰사건번호 등)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 묻고 답하기(Q&A)"를 통하여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공탁문고단하기](#)

관련사건으로 검색

관련사건	형사법원 ▼	대법원 ▼	2023 ▼	고단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검색"/>				

[대한민국 법원 형사공탁 공고 웹페이지]

나) 법원 혹은 검찰의 형사공탁사실통지고지

- 형사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측에 형사공탁사실 고지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탁사실을 알 수도 있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21호) 제9조 제4항, 제5항)*. 단, 이때에 이때 재판부에서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고지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검찰의 경우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제1329호) 제4조 제3항)**.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제9조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④ 재판장은 제1항, 제2항의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 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⑤ 제4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정 대검예규 제1329호, 2022. 12. 9.> 제4조(형사공탁 사실 통지서의 처리)

③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피공탁자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서면,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양식은 [첨부 1]과 같다*.

다.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경우

1)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 발급

- 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우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나 그에 대응하는 검찰청(사건이 확정되었다면 1심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에 문의하여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인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이때 해당 형사사건 진행 경과(① 법원에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수사기록의 제출 시기, ② 해당 형사사건의 확정 여부, ③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이를 준용하는 법률 포함)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 여부 등)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가 달라진다**.

법원 발급	검찰 발급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	증거기록 등이 법원에 제출되기 이전인 경우
증인 소환 등을 통하여 재판기록상 피해자인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 등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경우	판결확정 이후 재판기록 일체가 검찰에 인계된 경우

- 동일인 증명서 양식은 [첨부 2]와 같다*****.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제출

- 공탁물을 출급·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양식은 [첨부 3]과 같다*.

전화, 전자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그 고지일시, 방법을 처리부에 기재한다. 피공탁자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 * 현행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별지 제4호 양식, 법원 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 **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 *** 증거기록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이 적용되어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신원관리카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함)에는 심급이나 증거기록 제출 여부와는 관계없이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인적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경우를 말함
- ***** 현행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별지 제10호 양식, 법원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 * 현행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별지 제6호 양식, 법원 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25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지원 현장의 목소리

라. 피해자가 형사공탁을 거절할 경우

- 피해자는 원치 않는 형사 공탁에 대하여, 수령을 하지 않겠다는 거절의사를 형사 사건 진행 중인 법원 및 가해자(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공탁사실이 참작되어 가해자(피고인)의 양형에 감경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을 저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의견서' 혹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승낙서)'를 작성하여 가해자(피고인)에게 내용증명 등 그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송부하고, 해당 송부 사실을 비롯하여 공탁금 회수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한다.
- 공탁금 회수 동의서(승낙서)는 법령 등으로 정하여진 별도의 양식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통상 [첨부 4]와 같은 양식을 사용하게 된다*.
- 이처럼 피해자가 의견서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통해 가해자(피고인)의 공탁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 가해자(피고인)이 이를 기반으로 실제로 공탁금을 회수할 때는 ○ 공탁금 회수 동의서(승낙서) 뿐 아니라 ○ 동일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가해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별도로 송부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마. 이른바 '기습공탁'의 문제

- 최근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이른바 '기습공탁'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된다. '기습공탁'이란 가해자(피고인)가 형사재판 변론 종결 이후 갑작스럽게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채, 가해자(피고인)의 형사공탁 사실을 판결의 감형사유로 참작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다.
- 실제 진행했던 사안에서는, 공탁소에서 법원 및 검찰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날(2023. 4. 26.)로부터 5일 가량이 지나서야 법원에서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 고지서를 발송(2023. 5. 1.)하는 경우가 있었다. 즉, 판결 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기습공탁을 하는 경우, 피해자 등이 별도로 형사공탁 공고 등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피해자는 기습공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여 이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 현행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별지 제6호 양식, 법원 행정처,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른 묻고 답하기(Q&A)

2023.04.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2023.05.01	피해자변호사 정OO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발송	2023.05.02 송달됨
[실제 진행했던 사안에서 법원의 공탁사실 인지 후 피해자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 고지서 발송까지 소요된 일자]		

- 또한 다른 사안에서는, 가해자(피고인)가 판결 선고 2일 전에 기습공탁을 하여, 판결 선고 1일 전에야 법원에 가해자(피고인)의 형사공탁사실이 통지되기도 했다. 즉, 법원이 피해자변호사에게 형사공탁사실 고지서를 발송하기도 전에 곧바로 다음날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진주에 소재한 법원에서 진행한 사안이었으므로, 피해자변호사는 법원에 팩스 등을 보내어 선고기일변경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급히 진주의 지원인력을 섭외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견서를 당일 곧바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 형사법원은 팩스를 통한 의견서를 수령하지 않고, 우편을 통한 의견서 제출은 최소한 하루가 더 소요되므로,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민원실을 통해 피해자의 의견을 밝히는 것밖에는 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의 토지관할은 통상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정해지므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피해자나 피해자변호사가 해당 법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습공탁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2023.10.25	법원 진주지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제출
2023.10.25	변호인 법무법인 [블랙박스] 참고서면 제출
2023.10.25	피해자 OOO 피해자의견서 제출
2023.10.26	피해자변호사 정OO 선고기일 변경 요청서 제출
2023.10.26	변호인 법무법인 [블랙박스] 항소장 제출
2023.10.26	선고기일(제201호 법정 10:00)
[실제 진행했던 사안에서 기습공탁]	

2. 성폭력피해자 지원 제도의 무력화

가.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정보 노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소위 ‘가명’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성폭력 관련 법령상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도 앞서 살핀바와 같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이는 피해자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현재 형사공탁 제도 상 피공탁자의 성명 등에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즉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가명으로 기재된 경우 공탁 관련 서류에도 피공탁자인 피해자의 성명은 가명으로 기재되게 된다.

-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피고인)이 공탁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동일인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피고인)이 해당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된다([첨부 2] 참조). 이는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모순되므로, 가해자(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조서등에 범죄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擲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신원관리카드는 검사가 관리한다.

⑧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성폭력피해자 및 피해자변호사 의견제출을 재량사항으로 규정

- 현행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형사공탁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제출을 필수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제9조 (형사공탁 사실의 통지 등)

⑥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이 되어야만, 현행과 같이 기습공탁으로 인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감형이 이뤄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와의 현실적인 충돌

- 검사는 성폭력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이 의무 사항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 현장에서는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피해자,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적은 보수로 인해 고통받는 국선변호사 모두의 원성이 자자하다. 기사에 따르면, 2022년 피해자 국선변호사 635명이 맡은 사건은 4만 건 가까이로, 한명이 평균 60건을 맡았다. 5년 전 보다 사건은 두배 정도 늘었지만 늘어난 국선은 40명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선변호사가 개별 사건마다 피해자를 면담해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가해자의 수사와 재판까지 챙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도의 사건 수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기습공탁’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형사공탁의 고지를 받기 이전에 빠르게 공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응해주기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사선임의 특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 JTBC, ‘있으나마나 한 국선 사례...’애기 듣고 싶어도 못들어요” 항변도’, 2023-08-01

3. 피해자의 일상 회복 방해

가. 성폭력 피해의 회복을 금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

- 김보화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사법화가 강화되고 법이 시장화되면서,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에서 페미니즘 정치가 탈구(disarticulation)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피해자의 회복 및 성평등한 사회의 구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그런데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가해자(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문제된다. 특히 성폭력이 재산죄가 아닌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즉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회복되리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공탁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2, 4유형)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3, 4유형)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정범죄가중(누법)·특정강력범죄(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법, 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성범죄 양형기준 중 ‘강간죄’의 경우]

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공탁금의 취급

- 하급심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제공탁이 이뤄져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만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청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8364 판결 등 참조).

* 김보화, 『시장으로 간 성폭력』, 휴머니스트(2023)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이던 원고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행위는 원고의 신체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형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의료, 원고의 연령 및 피고와의 관계, 피고의 범행 방법, 태양, 횡수 및 죄질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가 보인 태도, 특히 피고는 'C'에 위탁·양육된 원고를 보호하거나 양육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원고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있던 원고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절차와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그밖에 피고가 형사재판절차 항소심에서 원고를 위해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

- 통상 판결문에는 위와 같이 판단하는 이유가 설시되지 않으나, 하급심 판결 중 형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변제공탁이 재산상 손해금의 변제 명목인지 여부가 특정되지 않은 채 손해배상금으로 변제공탁이 이뤄진 사안에서, 이에 대해 “위 돈이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변제공탁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돈은 재산상 손해금으로 변제공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피고(가해자)가 지급할 위자료에서 별도로 공제하지는 않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서 참작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참고가 된다(수원지방법원 2017. 2. 8. 선고 2016가단5190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를 뒤집어 말하면 형사공탁 시 공탁 원인사실의 기재 상 ‘위자료’ 명목으로 공탁이 이뤄졌음이 명시된 경우라면, 해당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손해배상의 액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

- 또한 만약 피해자가 공탁금 출급청구 시 ‘이익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탁금 외의 추가 손해금에 대하여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받아내기가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양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이익유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는 란이 있고,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별지 제6호 서식).

*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22. 12. 2. [행정예규 제1321호, 시행 2022. 12. 9.]

제5조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① 공탁자는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분 00로 0길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청구 및 이의유보	출급청구서
사유 ※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input type="checkbox"/>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런데 피해자가 ‘이의유보’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해당 공탁금의 액수가 실제 치료비, 위자료 등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라 할지라도 이를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인정받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도 현재 서식에 기재되어있는 정도 보다 더욱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첨부 1]

[별지 제4호 양식]

형사공탁사실통지서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호	
	공탁신청연월일	2022. 12. 9.	
	공탁물	금 일천만 원	
	관련사건	법원사건번호 및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 상해
검찰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형제6789호	
공탁당사자 정보	공탁자	나공탁	
	피공탁자	홍○○	
첨부서면의 명칭		공소장	
<p>공탁규칙 제85조제1항에 따라 형사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p> <p>2022. 12. 9.</p> <p>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직인) [연락처 : 123-4567(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과)]</p>			
<p>1. 위 통지서는 공탁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통지로서 통지서 기재 공탁금액과 공탁서상 공탁금액이 동일함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p> <p>2. 피공탁자가 공탁금액 확인을 원하는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서도 공탁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p>			

[첨부 2]

[별지 제10호 양식] 재판양식 B4972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형사본안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		형사제1단독
	상해		
공탁사건 정보	공탁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금제900500 형사공탁
	공탁물	금전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12345호	
		상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설명	홍○○		
피공탁자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87654-1234567	
<p>공탁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라 위 공탁사건의 피공탁자 동일인을 확인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22. 1. 9.</p> <p style="margin-left: 200px;">서울중앙지방법원</p> <p style="margin-left: 200px;">법원사무관 일참여 (인)</p>			
<p>1. 형사본안사건이란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p> <p>2. 본 증명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000-0000-0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6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탁번호		2022년금제900500호		공탁금액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공탁자	성명 (상호, 명칭)	나공탁		피공탁자	성명	홍○○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78910111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고		
	한글 일천만원 숫자 10,000,000원		(은행)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은행)			
보관은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하 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 기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input type="checkbox"/>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input type="checkbox"/> 피공탁자 동의에 의하여 회수 <input type="checkbox"/> 무죄판결 확정에 의하여 회수 <input type="checkbox"/> 착오공탁				
비고 (첨부서류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분증 사본 <input type="checkbox"/> 위임장 <input type="checkbox"/> 인감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input type="checkbox"/> 채권압류 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input type="checkbox"/> 채권양도 원인서면 <input type="checkbox"/> 법인등기사항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초본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무죄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 <input type="checkbox"/> 착오 증명서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좌입금	<input type="checkbox"/>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23년 1월 9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로 100000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987654-1234567 성명 : 홍길동 인(서명) (전화번호 : 010-1234-5678)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2023년 1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일공탁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형사공탁) 작성안내(뒷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 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계좌입금' 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4. 피공탁자 성명란에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 성명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7. 해당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음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서(공탁자의 회수청구에 대한 동意的 취지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 4]

공탁금 회수 동의서

공탁사건 000법원 0000급제0000 형사공탁
형사사건 000법원 0000노0000 사건명
검찰사건 000검찰청 0000형제00000
공탁자 성명 : 000
피공탁자 성명 : 000(000000-0000000), 가명 000
공탁금액 금 000원
공탁일시 2000. 00. 00.(접수일)

위 공탁자 000는 2000년 00월 00일 접수일자로 피공탁자에게 임의로 형사공탁을 하였는바, 공탁자의 이러한 공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공탁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피공탁자인 000(가명, 000)은 공탁자인 000가 위 일시에 공탁한 공탁금(금000만원)을 회수하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고 공탁자가 자신이 한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합니다.

- 아 래 -

1. 공탁자의 공탁원인사실

(간략한 피해사실 기재)

피공탁자는 현재까지도 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설사 형사공탁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공탁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공탁자에게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공탁자는 본인의 형량을 감경하기 위하여, 피공탁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본 형사공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2. 공탁금 회수 동의

따라서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귀원에 피공탁자를 상대로 형사공탁한 이 건 공탁만원)을 공탁자가 회수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시하기 위하여 공탁자 및 형사 재판부에 본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00. 00. 00.
위 동의자 000 (인)

[첨부] 피공탁자 신분증 사본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